

국민참여재판의 중간평가

김 병 수*

국 | 문 | 조 | 록

한국 역사상 최초로 형사재판에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와 함께 배심원 결정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불공정한 배심원 선정,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증대,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의 문제 등 '3년 안에 폐지될 제도'라는 우려도 있었다. 2008년 1월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지금 이러한 기대와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가 증진되고 있다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시간적·경제적 비용증대 등의 문제는 앞으로 참여재판의 진행을 더 두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전관예우·유전무죄 무전유죄¹의 문제가 참여재판에서는 발생할 여지가 보이지 않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리고 배심원 결정의 신뢰성과 배심원 선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기우에서 발단한 편견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참여재판 시행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접수율과 높은 철회·배제율에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항소율과 함께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으로 인한 참여재판의 실효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비판되고 있다.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는 배심원의 출석률의 경우도 국민의 소극적인 참여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대상을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불신의 원인인 화이트칼라 범죄로 확대하고 이들 범죄는 피고인의 선택이나 법원의 판단 없이 의무적 참여재판화하여야 한다. 둘째, 법원의 배제율을 낮추기 위하여 통상절차로의 회부사유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참여재판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참여재판의 항소심을 법률심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다섯째,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하며,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자신에게 물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피고인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알기 쉽고 빠른 재판'으로 배심원을 배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주제어 : 국민참여재판,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화이트칼라 범죄, 평결의 기속력, 알기 쉽고 신속한 재판.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연수연구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법학박사

I. 문제의 제기

사법의 민주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응집되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법률’로 약칭함)이 제정되어 2007년 6월 1일 공포되었다.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이하 ‘참여재판’으로 약칭)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형사재판에 시민이 참여하게 되어 그동안 사법부에 대하여 쌓여 왔던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에 대하여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법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참여재판은 당초 신청이 폭주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상사건에 비해 신청률이 저조하고 실제 판결도 많지 않으며,¹⁾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행의 참여법률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범운용을 한 뒤 5년간의 시행결과를 통해 전면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참여재판제도가 2008년 시범 실시된 지 2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기존의 결과를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남은 기간 동안의 시행방향을 조정하는데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향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한국의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선하는데 본 연구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래서 먼저 참여재판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으며 시행 2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이러한 기대와 우려가 얼마나 현실로 나타났고 그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을 통해서 향후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2008년과 2009년 동안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11,498건 중 569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접수되어 접수율이 4.9%이 그치고 있고, 접수된 569건의 사건 중 159건(27.9%)만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2008년/2009년)』, (2010. 1.), 4-5면 참조.

II.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기대와 우려

참여재판제도는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²⁾ 즉 법률의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국민, 특히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의하여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실현되면 국민의 사법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나아가 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에서 출발하였다.³⁾ 그러나 참여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 참여법률이 설계한 ‘참여재판’의 운명에 대하여 “3년 안에 폐지될 제도”라는 직업법률가들의 비판적 전망도 있었다.⁴⁾ 참여재판이 시행된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참여재판제도는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섰다고 본 실무가도 있었다.⁵⁾ 이러한 참여재판제도에 관한 기대와 우려를 검토하여 시행 2년의 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1. 참여재판에 대한 기대

2003년 11월 KBS의 특별기획물인 <한국사회를 말한다>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경우 법 적용에 국민의 정서와 의식이 반영되며,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여론조사 되었다.⁶⁾ 이처럼 국민이 사법절차의 주역으로 참여하게 되면 사법에 시민적 감각과 가

2)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제고가 참여재판 도입의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3)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83면.

4) 2007년 10월 2일자 법률신문, ‘국민참여재판 성공의 길(상)’ 중에서 인용.

5) 이완규, “국민참여재판제도 정착 방안/지정토론”,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2008. 9.), 한국법학원, 543면.

6) 2003년 11월 KBS의 특별기획물인 <한국사회를 말한다> 제작을 위하여 이루어진 이 조사는 2003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7대 광역시 20대부터 60대까지의 남녀 1,038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시민참여가 재판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1,038명의

치를 반영하여 사법에 대한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 및 증거수집절차의 객관성, 공정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

한 여론조사에서는 법관의 공정성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매우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다’가 1.2%, ‘평등하게 대우하는 편이다’가 36.4%)는 응답은 전체응답자의 37.6%에 지나지 않으며, “불평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불평등하게 대우하는 편이다’가 56.2%, ‘매우 불평등하게 대우하고 있다’가 6.3%)는 응답은 62.5%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형사재판의 절차나 결과에 있어 법관이 피고인을 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고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2003년 11월에 실시된 KBS 여론조사결과⁸⁾에서도 “재판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68.6%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답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 9.7%를 제외한 21.7%의 응답자들만이 재판이 공정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2003년 12월에 실시된 대법원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현 형사재판이 빈부격차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사회적 약자 측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응답자를 대상으로 “만약 배심원제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경우 재판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법적용에서 국민의 정서와 의식이 제대로 반영될 것이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다’는 응답이 23.0%였음. 한편 부정적인 응답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는 응답이 18.8%였으며, ‘법의 권위와 위엄이 떨어질 것이다’는 응답은 4.9%에 불과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2.0%였다.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경우 법적용에 국민의 정서와 의식이 반영되며,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응답해(74.2%) 시민참여형 재판제도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한편 시민참여형 재판제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거나 법의 권위와 위엄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은 23.7%에 불과했다.

7) 이 조사는 대법원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조사전문업체 M&C Research가 2003년 12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전국 6대 광역시 성년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I)-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법서비스 개선방안-』, 2004, 114면.

8) 각주 6) 참조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3.7%가 부정적 응답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⁹⁾

이처럼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만연된 현상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및 ‘전관예우’로 대표되는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법조인들의 유착과 담합일 것이다. 이것은 법조실무자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특정 개인, 집단, 계층의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사법업무를 그릇되게 처리했던 사건들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사법절차 및 판결에 대하여 의심 내지 의혹을 갖고 바라보게 하였고, 대형 경제 및 정치적 비리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더욱 증폭시켜 왔다.¹⁰⁾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참여재판이 법조인들의 유착과 담합의 사슬을 끊고 법조비리를 근절시켜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한편 그 동안 사법에 일반국민의 불신이 제도와 제도운영에 대한 오해나 편견에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도 국민의 사법참여가 사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재판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제도 및 재판에 대하여 보다 더 친숙한 태도를 갖게 되고, 사법의 실상에 대한 직접적 체험을 통하여 사법에 대한 이해심을 키우게 된다. 또한 자신들이 재판하고 판결을 도출하는 데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법에 대하여 보다 신뢰하고 보다 덜 불만을 갖게 된다. 더욱이 참여재판제도 하에서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가 절실하게 요청되므로 재판에서의 논쟁과정과 입증과정 등이 재판에 참여한 시민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 그대로 공개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반국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참여한 절차를 통하여 얻은 결과인 만큼 직업법관제도하에서의 판결보다 이에 승복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¹¹⁾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앞의 책, 115면.

10) 박미숙 외 6인,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II):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47면.

11) 김대성,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의 도입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07, 199면 참조.

나.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증진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에도 적용할 수 있다. 사법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사법권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은 사법의 민주화가 덜 성숙되어 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의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우리의 사법이 직업법관에 의한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고, 일반국민은 사법절차의 객체에 불과하여 재판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게다가 법관의 임명에 있어서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과 행정부를 통할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어 짧은 임기동안만 권한을 위임받는데 반해, 우리의 법관은 국민의 선출이 아닌 방식으로 한번 임명되면 (특히 재임용의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탈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장기연임을 하게 된다.¹²⁾ 따라서 국민의 위임과는 무관하게 재판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민주주의,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사법은 입법부나 행정부보다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법관의 임용 및 신분이 국민이 만든 헌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관직 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그 임용 및 보직에 있어 국민의 의사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¹³⁾ 이처럼 우리의 사법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기에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방법은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 시민에 의한 사법의 제도화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법의 민주화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참여이고 이로써 재판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게 되어 형사사법 실무자들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나 권한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통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고, 이

12)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고 교육을 받아 변호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다시 임명된다. 법관의 임명에는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개입한다. 법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는 시도되지 않은 채, 한국의 법관은 사법관료로서 남아 있다. 그만큼 국민의 직접적 의사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있게 된다.

13) 안경환·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2005, 27-28면.

로써 국민의 인권과 자유의 보장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평가된다.¹⁴⁾

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

지금까지 한국의 재판은 전문가들인 법조인만이 알 수 있는 언어와 절차로 이루어졌고,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는 법정에서 어떤 내용의 재판이 이루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었다. 특히 직업법관의 독점적인 사실인정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독단적 판단에 대한 우려는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재판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소의 폭주, 재판결과에 대한 불신 등으로 사법제도의 근간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참여재판에서는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 교육수준, 성별, 종교, 연령 등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서로 상대방의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일정한 기준에서 서로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게 되는 참다운 의미의 속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속의민주주의의 힘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그 탁월한 능력에 있다. 특히 공판중심주의에서는 제한된 경험과 배경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보다 여러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사실의 발견이 더 잘 이루어지고, 집단이 토론을 통해서 판단할 때 개인이 가진 기억의 한계가 더 확장되고, 집단의 토론과정에서 누구나 범할 수 있는 판단의 오류가 수정될 기회가 더 많아지며, 어떤 상황에서 서도 있을 수 있는 의도적 진실왜곡이 극복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상식적, 논리적, 경험적 사실이다.¹⁵⁾ 그러므로 참여재판은 형사재판절차에 일반시민을 참여시킴으로써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또한 직업법관에 의한 독단적인 판단에 제동을 걸어 오히려 편견 없는 판단에 이를 수 있게 됨으로써 사실발견 절차에 도움이 되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데 그 본질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4) 박미숙 외 6인, 앞의 책, 46면.

15) 한인섭·한상훈 편(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 『국민의 사법참여』, 경인문화사, 2010, 13-14면.

2. 참여재판에 대한 우려

가. 3년 안에 폐지될 제도

참여재판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제도이니 만큼 이 제도의 성패는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실무자들은 배심원으로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며 갈수록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 참여재판이 집중심리가 강조되어 배심원 선정부터 평의, 선고까지 모든 절차를 하루만에 종결하더라도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길 것이고 차츰 꺼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참여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 참여재판의 운명에 대해 “3년 안에 폐지될 제도”라는 직업법률가들의 비판적 전망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비관론자들은 자신들의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참여재판이 대상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즐겨 활용되지 못할 것이며, ‘배심원 후보자로 소환된 사람들의 출석률’(이하 ‘출석률’로 약칭함)도 낮을 것이라는 직관적 전망을 하였다. 비관론자들의 전망 중 하나 -참여재판이 피고인들에게 즐겨 활용되지 못할 것이다-는 ‘정확한 진단일 수 있다’는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¹⁶⁾ 또한 2008년 참여법률이 시행되고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지난 6개월의 시행 경험에서 참여재판제도는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섰다고 본 사람도 있다. 참여재판을 신청하는 피고인들이 적은데다 신청한 피고인들조차도 30%이상 철회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참여재판의 신청건수는 계속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⁷⁾

나. 배심원 결정의 신뢰성 문제

배심원으로 참여한 일반 시민들은 직업적 훈련을 받은 법관에 비해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며, 감정적·정서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기 쉽고 언론이나 여론의 향배에 치우칠 우려도 있어 냉정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선입견이나 편견 등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에

16) 심회기, “시민의 관점에서 본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전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 12.), 한국사회학회, 729면.

17) 이완규, 앞의 글, 543면.

의하지 않고 자기중심적 감성재판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전문성의 문제이다. 즉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훈련을 받거나 공식적으로 그 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과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¹⁸⁾ 그리고 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인맥, 여론과 편견, 정치 및 사회상황, 매수 등의 외부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여론조사에서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판결을 한다면, 우리 국민이 인정, 지연, 학연 등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각각 50%로 양분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한국 국민들 스스로가 명확한 확신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¹⁹⁾ 그리고 앞의 문제들과 함께 감성재판의 문제가 있다. 즉 배심원들은 심리과정에서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 등 사건관련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건관련자들이 배심원의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 등 소위 변론이나 진술의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유·무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도 ‘법률판단의 윤리화’에 흘러 양형요소에 의하여 유·무죄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²⁰⁾

18) 또한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배심재판이 도움이 안 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잘못된 판단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고 사건처리에 있어서도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배심원들이 정확하게 판단 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대권, 『국민의 사법참여 -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2004, 14면.

19) 자신을 제외한 타인평가 측면에서 한국 국민이 배심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매우 아니다(1.5%), 아니다(48.5%)의 부정적 평가가 50%, 그렇다(46.0%), 매우 그렇다(4.0%)의 긍정적 평가가 50%로 각각 양분화 되어 나타났다. 사법개혁공대위(준), 『국민사법참여 제도』, 2004, 16-18면.

20) 이러한 재판에서는 철저한 당사자주의 공판절차의 진행으로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소송결과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배심제도의 원형인 영미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현수,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111호(2009. 6), 한국법학원, 219-220면.

다. 불공정한 배심원 선정의 우려

배심제도의 이념적 출발점은 판사 한사람이 재판을 전담하는 것보다 사회 각 계층의 사람들을 골고루 포함하는 배심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경험과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갖게 되는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서로 비교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하여 훨씬 올바르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심원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모든 계층과 집단의 사람들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배심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²¹⁾ 그런데 시행 초기 몇몇 참여재판의 후보자 명부를 확인해보니 3-40대의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층들의 비율이 낮은 것 같았다. 그러다보니 20대의 학생, 주부, 무직자, 노년층이 배심원단의 주력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다보니 이들만으로는 아무래도 보편, 타당, 합리적인 평결을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라.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증대

우리나라에 있어서 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의 재판비용에 첨가하여 추가비용이 따르리라는 점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²²⁾ 그렇다면 과연 동제도의 시행으로 우리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이며, 편익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즉 보다 객관적이면서 효율적 비용으로 정당한 판결에 이를 것인가 하는 참여재판제도의 효율성 즉 합리성의 문제이다. 실제 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따른 비용증대 여하에 대하여 2005년도 당시 연구보고서²³⁾는

21) 성선제, “미국의 형사배심제도”, 미국헌법연구 Vol.-No.14, 2003, 242-242면.

22) 참여재판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국가예산에 있어서 상당한 비용이 증대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어진다. 절차 참가자들에 대한 비용의 문제라든가, 변호인에 대한 실질적인 변호비용의 지급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드는 비용이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23) 이 연구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용역과제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국민참여재판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예산의 추정’라는 제목으로 시행되었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1단계 사법참여제도가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10년간 완성된 사법참여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비용을 추계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시행에 따른 편익의 크기는 추정하지 않았다. 한인섭·한상훈편(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 앞의 책, 279-292면 참조.

2021년까지 대략 780억원의 회계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지 그리고 그 얻은 이익으로 지출한 비용을 상쇄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를 염려를 하고 있다. 참여재판이 혹시나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가 되거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마.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결여

1)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으로 참여재판의 실효성 의심

참여재판은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²⁴⁾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에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임을 명백히 하여 제기될 수 있는 위헌 여부에 관한 시비를 피해갔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된다.²⁵⁾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전처럼 직업법관이 판단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는데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어렵게 도입된 제도가 법원의 일방적인 독주로 사실상 겉치레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게 되어 참여재판의 존재 필요성까지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에 법원이 기속되지 않는다면 직업법관의 의사보다 배심원단의 의사가 하위에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며, 현재의 참여재판은 직업법관이 국민 위에 존재하게 되므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반할 수 있다.

2) 참여재판에 대한 항소

우리나라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참여재판이 2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의 재판의 형태·직업법관에게 판단이 맡겨져-를 취하기 때문에 종전 재판과 다를 게 없게 된다.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판단한 참여재판의 결정을 직업법

24)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닌 일반국민에 의한 재판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5) 안성수, “국민참여 재판제도 시행과 인권옹호(심포지엄 지정토론 요지)”, 저스티스 통권 제102호, 2008.2, 37면 참조.

관으로 구성된 항소심에서 반복할 수 있다면, 참여재판은 항소심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이는 다수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석하여서 일반 국민의 시각이 반영된 판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의 직업법관들은 배심원들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는 본래의 참여재판과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참여재판의 결정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는 일이 자주 나타난다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을 참여시키는 재판제도를 과연 존치시켜야만 하는지 그 존재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²⁶⁾

Ⅲ. 기대와 우려에 대한 시행 2년의 중간평가

참여법이 국회를 통과한 때부터 제도의 시행에 관한 많은 견해들이 나왔고, 2010년 3월 14일에는 대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 2주년 업무성과 분석’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대해 참여재판이 ‘정착 단계를 넘어 확대 추세’에 있다는 대법원 관계자의 자화자찬(自畫自讚)도 있지만²⁷⁾ 그에 못지않게 “참여재판이 제자리를 못찾고 있다”는 엇갈린 평가²⁸⁾도 있다. 이처럼 참여재판이 비교적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참여재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어떻게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가늠해 보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이 성공적 제도정착을 위한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26) 전정호, “국민참여재판제도 정착 방안/지정토론”,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2008. 9.), 560-561면.

27) 세계일보, 2010. 3.14.

28) 인터넷 한국일보, “제자리 못잡는 국민참여재판”, 2010.7.5.,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후 철회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배심원 후보자의 출석률도 절반을 넘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눈을 통해 재판을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8년 2월부터 시범 실시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연착륙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007/e2010070518000593760.htm>

1.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에 대한 평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8년도 법원관련 의식조사결과를 보면 63.1%가 참여재판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판 신뢰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하였지만, 종전조사(2003.12.)에 비해 인식이 개선되었는지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다.²⁹⁾ 그러나 참여재판에 출석한 배심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5.1%의 배심원이 직무수행에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재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³⁰⁾ 그리고 배심원 참여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줄어들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에는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비난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증진될 수 있는 상황들이 참여재판의 시행과정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먼저, 법조인들의 자세가 바뀌었다. 법관들은 배심원들에게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야 했다. 검사와 변호인들은 배심원의 눈높이에 맞추고, 배심원의 지적 수준에 맞추어야 했다. 법원의 높은 문턱은, 시민이 참가함에 따라, 시민의 높이만큼 재조정되었다. 그동안 비판받아온 법조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아직 충분치는 않아도, 질적 변화의 시동을 건 것은 분명하다.³¹⁾ 그리고 참여재판을 준비하는 공판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검사의 경우도 참여재판의 신청이 들어와 그 실시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부 중심이 아닌 배심원 중심으로 철저히 배심원 시각에 맞춰 모두진술, 증거조사절차 및 최후변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모두진술에서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공소사실의 요지뿐만 아니라 쟁점까지도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증거조사 역시 증인들에 신문이 배심원 시각으로, 증거지시설명도 영상재현기, 파워포인트, 동영상 재생 등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최후변론에서조차도 쟁점

29) 종전조사(2003.12.)에 없었던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추가됨에 따라 ‘기여할 것’,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의 비율이 감소하여 종전 조사에 비해 인식이 개선되었는지 정확히 비교하기 어려움. 법원행정처, 앞의 책, 30면.

30) 배심원의 만족도가 높은 정도는 공판절차 > 선정절차 > 평의절차 > 최초대기 순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 앞의 책, 36면.

31) 한인섭, “한국의 배심원재판-준비과정과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토한다”,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2호, 2009. 704-705면.

요약 및 증거 정리, 유사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제시 등도 파워포인트 이용방식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변호인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파워포인트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대하고 있다. 어렵고 두렵게 느껴졌던 형사재판이 친절하고 자상한 재판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증진’에 대한 평가

사법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관을 국민들이 선출하는 법관선출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현재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은 참여재판을 통해서 시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재판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배심원들이 일반적인 법감정에 가까운 평결을 하게 되면 직업법관이 자칫 이론적인 법 논리에만 의거해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수의 상식에 의한 판단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판사의 개인의 편견에 의한 판단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게 되어 형사사법 실무자들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나 권한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물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참여재판은 직업법관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평결결과와 형량에 관한 의견을 참고하는 선에서 그친다. 즉 배심원단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국민이 사법권의 핵심인 판결선고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배심원단의 의견과 다를 경우 재판부는 왜 다른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므로,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결정과 의견에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배심원단의 결정이 정말 납득하기 어렵거나 절차와 과정상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별개의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³²⁾ 이처럼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판단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32) 박근용, “국민참여재판, 사법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다”, 시민과 세계 제13호(2008. 4.),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315-316면.

는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하였지만 참여재판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분명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진일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실체적 진실발견’에 대한 평가

지난 2년 동안의 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율이 8.8%로 일반재판의 3%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난 것³³⁾과 항소심의 파기율도 28%로 일반사건의 41%보다 낮다는 점만 가지고는 반드시 참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이 확보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참여재판의 무죄선고율이 일반재판의 무죄선고율보다 높은 것을 두고 ‘유죄자 필벌’의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보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더 강조되어진 것으로 이해한다면, 국민이 배심원으로 판단한 참여재판이 일반재판보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된다’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더 충실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참여재판의 항소심 파기율이 일반사건의 항소심 파기율보다 낮다는 것도 국민들이 참여하여 내린 결정은 직업법관 한 사람이 내린 결정보다 실체적 진실에 보다 접근하여 이를 함부로 파기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어쩌든 참여재판을 통하여 공판중심주의가 철저히 실현되고, 구두주의, 집중심리주의 등의 제 원칙이 현실화되는 효과를 가지므로 실체적 진실발견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으므로 억울한 범죄인이 생기는 오판을 방지할 수 있다. 재판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안정성보다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이고 참여재판은 배심원으로 참여한 일반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하므로 구체적 타당성 있는 재판의 실현에 있어서 직업 법관에 의한 재판보다 훌륭하게 기능할 것이다.

33) 양형분포를 살펴보면, 무죄율은 8.8%임. 무죄율=선고받은 인원수(14명)/판결을 선고받은 인원수(159명).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법원 형사합의부 사건 1심 무죄율인 3.0%보다 높게 나타난다. 법원행정처, 앞의 책, 19면.

4. ‘3년 안에 폐지될 제도’에 대한 평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심 피고인 수를 기준으로 569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그 중 159건(27.9%)이 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참여재판 대상사건 11,498건 중 겨우 4.9%인 569건이 참여재판으로 신청되었고, 피고인이 신청한 569건의 사건 중에서도 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59건과 미제사건인 46건을 제외한 364건이 법원에 의해 배제되거나 피고인이 철회하였는데, 이들 중 37%가량인 136건이 ‘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이라는 이유에서 재판부가 참여재판에 회부하기를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참여재판의 신청이 저조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거론하고 있지만 대상사건이 주로 살인, 강도상해, 성범죄 등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당초 참여재판에 필요한 인적·물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사건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행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사건을 제한하였다. 참여재판이 시행되면 강력범죄만으로도 사건이 넘칠 것이라고 예상한 법조인들이 많았지만 실은 기우에 불과하고 말았다. 현재까지의 추이를 감안해 볼 때 참여재판의 신청률이 이처럼 낮을 것으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다. 어렵게 도입한 참여재판이 지금처럼 신청률이 저조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제도를 경험해보지도 못한 채 유명무실화 될 수도 있다. 이런 추세로 계속 진행된다면 ‘3년 안에 폐지될 제도’라는 평가도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008/2009년 제1심 접수/처리/미제 건수】³⁴⁾ (2008. 1. 1. - 2009. 12. 31.)

접수		처리								미제
		합계		참여재판		배제		철회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8년	233	215	92.3	64	27.5	61	26.2	90	38.6	18
2009년	336	308	91.7	95	28.3	75	22.3	138	41.1	46
합계	569	523	91.9	159	27.9	136	23.9	228	40.1	46

34) 월 평균 23.7건이 접수되었다. 2008년에 비해 2009년에는 배재율은 감소하였으나, 철회율은 소폭 증가하였다. 법원행정처, 앞의 책, 2면.

가. 낮은 접수율

대법원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참여재판 대상사건 2,008건 가운데 실제 참여재판으로 신청된 것은 164건에 그쳐 접수율은 8.2%에 불과하다. 이는 대상 사건 10건 중 1건에도 못 미치는 신청 수치이다. 그런데 2010년 1월 대법원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접수율은 더욱 낮아졌다.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참여재판 대상사건 11,498건 중에서 4.9%인 569건이 참여재판으로 신청되어 접수율은 2008년보다 더 낮아졌다.³⁵⁾ 이처럼 접수율 또는 신청율이 낮은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법률 제8조에서는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지 7일 이내에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표시를 위한 숙고기간으로 짧다는 견해에 의하면 실제 참여재판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피고인 스스로가 결정하다가 시기를 놓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³⁶⁾ 그리고 참여재판은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받을 수 없어(참여법률 제10조 제1항) 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되는 불이익이 두려워 피고인의 입장에서 신청을 꺼릴 수 있다. 또한 참여재판의 공판준비기일부터 공판기일까지 약 4주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데, 일반재판보다 공판기일이 늦어지면 전체 재판도 늦어질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신청을 기피할 수도 있다.³⁷⁾ 신청을 기피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좀 더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저조한 접수율의 주요 원인은 참여재판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한 피고인의 부정적 인식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35) 대상사건 11,498건 중 4.9%인 569건이 참여재판으로 접수되었다. 대상사건 11,498건 중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살인미수 등이 1,634건, 상해·폭행치사 등이 421건, 강간·상해·치상 등이 1,691건, 강도·살인·강도상해 등이 2,966건, 성폭행이 2,274건, 기타가 2,512건이다. 강도 등(29.9%), 살인 등(26.4%), 성범죄(23.5%), 기타(14.8%), 상해치사등(5.4%)의 순으로 접수되었다. 569건의 사건 중 159건(27.9%)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법원행정처, 앞의 책, 4-5면.

36) 김태규,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4호(통권 제76호, 2008·겨울호), 6면.

37)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저스티스, 통권 106호(2008.9), 한국법학원, 499면.

나. 높은 철회 및 배제율

그나마 참여재판으로 접수된 569건의 사건 중에서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59건 외의 410건의 사건을 살펴보면, 228건은 피고인 스스로가 철회했고(접수건수 대비 철회율 40.1%), 136건은 재판부가 배제결정을 내려 참여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접수건수 대비 배제율 23.9%). 나머지 46건은 미제사건이다. 접수 건수의 64.0%가 배제·철회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 참여재판으로 연결된 사건은 전체 신청건수의 1/3에도 못 미치는 159건에 불과하다(27.9%). 배제사유는 참여법률 제9조 제1항의 1,2,3호에 따라 어느 정도 유형화 되고 있으나 철회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료는 없다.

배제 결정의 대부분이 참여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였다. 배제 사건 136건 중 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 사유인 ‘배심원 안전 위협·공정한 직무수행 우려’를 적용하여 배제결정을 한 경우는 없고(0.0%), 제2호 사유인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을 적용한 경우는 32건이며(23.5%), 제3호 사유인 ‘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을 적용한 경우가 104건이다(76.5%). 접수 건수 대비 배제 건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법원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서울서부의 경우 접수 19건에 배제 1건으로 접수건수 대비 배제건수의 비율이 5.3%로 최저인데 반해 부산의 경우 60건 접수에 배제건수는 22건으로 36.7%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각 법원들의 배제 결정의 활용 정도에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철회사유를 ① 피고인이 참여재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거나 착오로 신청하였다가 철회 ②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가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 같아 철회 ③ 피고인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참여재판을 희망하였다가 생각을 바꾸어 철회 ④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⑤ 추가 기소 사건이 있거나 증인이 여러 명 있는데 소환 여부가 불투명하는 등 절차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스스로 철회 등으로 예시하고 있으나 사건별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한 자료가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법원별로 철회건수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한다. 철회 비율은 최저 17.0%에서 최고 63.6%로 다양하게 나타난다.³⁸⁾

다. 국민의 소극적 참여

국민의 소극적인 참여로 참여재판제도의 안착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염려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년 동안 시행된 참여재판 현황을 분석한 법원행정처 자료에서 17,424명의 배심원 후보자에게 기일 통지 결과 5,419명이 출석하여 31.1%의 출석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송달불능된자, 출석취소통지를 한 자를 제외한 실질 출석률은 57.8%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자체 판단하였다.³⁹⁾ 그러나 우리나라의 참여재판과 유사한 일본의 ‘재판원제도’는 지난해 5월 제도를 도입한 후 80%를 뛰어넘는 출석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출석률이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또한 법원별로 배심원후보자 출석률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난 것도 문제이다. 배심원후보자의 출석률은 서울북부지법이 42.0%, 실질출석율은 서울서부지법이 76.6%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데 반해 서울중앙지법(22.5%), 전주지법(23.2%)의 출석률은 2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⁴⁰⁾ 이처럼 배심원 후보자의 출석률이 절반을 넘긴 수준에 그치고 있고 법원별로 출석률에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 참여재판이 아직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판단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당사자인 피고인의 부정적 인식과 소극적 태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참여재판을 철회한 피고인들은 “재판에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석해 자기의 잘못이 알려지고, 여론이 관심을 갖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고,⁴¹⁾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할 경우 관계자들의 업무를 번거롭게 하여 오히려 그들이 피고인 자신을 밟게 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으며,⁴²⁾ 참여재판을 막상 신청했더라도 상담과정에서 ‘참여재판을 신청해도 특별히 유리한 측면이 없을 것’이라고 말

38) 법원행정처, 앞의 책, 6-10면.

39) 그리고 출석한 배심원후보자 5,419명 중 25.4%에 해당하는 1,376명이 배심원·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

40) 법원행정처, 앞의 책, 32-33면.

41) 아시아경제, 2008.10.22. 참조.

42) 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공판검사 뿐만 아니라 수사검사도 직접 법정에서 나와야하는 등 업무가 일반재판에 비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참여재판을 신청할 경우 검사가 자신을 곱게 보지 않을 것 같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양형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검사들이 싫어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상 참여재판을 신청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하는 변호인 때문에 마음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이다.⁴³⁾ 이처럼 신청당사자인 피고인 스스로 참여재판을 통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는 부정적 인식과 소극적 태도가 참여재판의 저조한 실적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5. ‘배심원의 결정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평가

가. 배심원의 전문성과 심리집중도

당초 법조인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배심원들이 법률적으로 복잡한 사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걱정과 달리 배심원들은 상당한 정도의 집중력을 갖고 사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부분의 배심원이 심리에 집중하였으며, 87.3%의 배심원이 재판 내용을 모두 또는 대부분 이해하였다.⁴⁴⁾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이 일치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심리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159건의 참여재판 중 90.6%에 해당하는 144건에서 평결과 판결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⁴⁵⁾ 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견해와 직업법관의 견해가 90%이상 일치한다는 것은 배심원의 결정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양형의견과 선고형량 분포에서도 볼 수 있는데, 93.1%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배심원 양형의견 중 다수의견과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근접한다는 것이다. 재판부와 배심원이 함께 양형토의를 거치면서 양형의견과 선고형량의 분포가 유사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양형의견과 선고형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대체로 2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43) 피고인이 참여재판 대상범죄인 중죄사건은 주로 전관 변호사들이 맡는 경향이 많았고 이들은 그동안 전화를 하거나 서면 제출을 하는 식으로 변론을 맡아왔던 업무스타일에 익숙해 있다. 따라서 이들은 배심원들에게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설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관의 힘이 약해지는 참여재판을 선호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이금옥,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2008.12), 한국비교공법학회. 145-146면.

44) 배심원 중 ‘대부분 집중’이 88.9%, ‘절반 정도’가 10.7%, ‘거의 집중 못함’이 0.4%였다. 배심원의 이해도도 ‘모두 이해’ 27.6%, ‘대부분 이해’ 60.2%, ‘절반 정도’ 11.4%, ‘거의 못함’ 0.7%였다. 법원행정처, 앞의 책, 36-37면.

45) 법원행정처, 앞의 책, 23면.

【배심원 양형의견(다수의견)과 선고형량 분포】⁴⁶⁾ (2008.1.1. - 2009.12.31.)

양형의견 > 선고형량	양형의견 = 선고형량	양형의견 < 선고형량	합계
5(3.8%)	122(93.1%)	4(3.1%)	131

※ 양형의견 = 선고형량 : 양형의견과 선고형량의 차이가 ±1년 이내인 경우

※ 평결과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 및 무죄 선고된 경우는 제외함.

※ 판결문에 기재된 배심원 양형의견 중 다수의견과 선고형량을 비교함.

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초연한 배심원

참여재판의 배심원이 학연, 지연, 여론 등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 또한 배심원 개인의 감정에 치우친 감성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그들이 관여하는 재판의 결과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배심원들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증거를 심사숙고하며, 법관과 의견이 다를 때 법관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보고 국민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던 법조인들도 배심제에 대한 신뢰와 국민역량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됨을 고백하곤 한다.⁴⁷⁾ 또한 참여한 배심원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도 애초의 우려들이 지나친 기우에서 발단한 선입견 내지 편견의 산물임을 느끼게 된 되었다.

이처럼 양형의견과 선고형량의 일치율에서 나타나는 심리집중도와 배심원들이 보여준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 그리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초연함은 일반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신을 해소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46)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양형실무에 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양형토의를 진행하기 전까지 형성된 재판부의 양형의견과 배심원의 양형의견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법원행정처, 앞의 책, 24면.

47) 많은 법조인들이 배심원들에게 가졌던 막연한 불신의 뿌리는 범정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쟁점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으려는 모습들, 자기주장만 계속 되풀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일반시민들이 배심원으로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참여재판에서 나타난 배심원단의 판단능력에 대한 우려는 일반 사건의 당사자들과 배심원단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한인섭, 앞의 글. 704-705면.

6. ‘불공정한 배심원 선정의 우려’에 대한 평가

배심원이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에 집중되는 등 배심원 선정이 잘못될 수 있다는 염려는 실제 시행된 2년 동안의 참여재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즉 배심원후보자 및 배심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배심원후보자가 성별·연령·직업별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5,419명 중 25.4%에 해당하는 1,376명이 배심원·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배심원·예비배심원도 성별·연령·직업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배심원의 구성비를 배심원후보자의 구성비와 비교할 때, 남성, 30·40대, 회사원의 비율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⁸⁾ 30·40대가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계층이라고 본다면 고무적인 현상이다.

또한 공정한 배심원 선정을 위해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배심원들을 이유부기피와 무이유부기피제도를 통해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놓고 있다. 즉 참여법률 제28조 제3항에서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당해 배심원 후보자에 대하여 불선정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유부기피제도를 두고 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이유부기피신청이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실제 159건 중 47건에서만 이유부기피신청이 있었고, 112건은 이유부기피 신청이 없었다. 1건당 평균 0.43명이 이유부기피신청되고 있었다. 이유부기피신청은 거의 기각되고 있었다. 이는 이유부기피신청에 관하여 엄격한 판단기준에 따라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비교적 명백한 경우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이유부기피신청은 특정한 배심원 후보자에 대하여 불공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배심원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검사나 피고인, 피고인의 기피신청을 말한다. 조사기간 중 1건당 평균 5.4명의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었다. 배심원의 수가 늘어날수록 무이유부기피신청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부인 사건에서의 무이유부기피신청된 배심원후보자의 수가 자백사건에서 보다 평균 1.7명 많았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이유부기피 신청이 평균 6.9명으로 가장 활발

48) 법원행정처, 앞의 책, 35면.

하였다. 검사, 변호인이 행사 가능한 무이유부기피 신청을 모두 행사한 사건은 159건 중 22건(13.8%)에 불과하였다.

7. ‘시간적·경제적 비용 증대’에 대한 평가

가. 시간적 비용의 증대문제에 대한 평가

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기존의 재판절차와는 달리 배심원선정절차, 평의나 평결절차 등이 추가되므로 당연히 일반재판 보다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참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처럼 다음 공판기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하루 만에 선고를 제외한 모든 절차를 마치므로,⁴⁹⁾ 공소제기부터 판결선고까지 전체적인 처리기간으로 보았을 때 참여재판이 일반 형사재판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참여재판은 접수일로부터 공판준비기일까지 평균 41.2일이 걸렸고 공판준비기일부터 첫 공판기일까지 43.7일이 걸려서 접수일로부터 첫 공판기일까지의 평균 처리 기간은 84.9일이었다.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일반 형사합의부 사건의 평균처리기간(구속:88.2일, 불구속:129.7일)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재판의 구체적인 처리기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재판은 공소제기일로부터 첫 공판준비기일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은 41.2일이 걸렸다. 그러나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지방법원 본원의 형사합의부 구속사건의 공소제기일로부터 첫 공판기일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26.9일이었다. 즉 참여재판은 일반사건보다 첫 기일 지정이 늦었다. 이것은 공판준비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하는 데에 일정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서면 접수 후에 전담재판부로의 재배당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서 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참여재판은 하루 만에 선고를 제외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49) 159건 중에 하루 만에 마친 경우가 141건으로 88.1%에 이르고, 이들 만에 마친 경우는 18건 11.3%에 그쳤다. 법원행정처, 앞의 책, 15-16면.

나. 경제적 비용의 증대에 대한 평가

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2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얼마의 경제적 비용이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2005년도 당시 연구 보고서⁵⁰⁾는 2021년까지 대략 780억원의 회계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한 나올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의 크기를 화폐단위로 추정하지는 못했다. 다만, 참여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인식변화, 범죄율의 감소, 법교육적 편익, 거버넌스 체제 구축, 오판율의 감소, 법관에 대한 명성(reputation)의 향상과 법적 책임성의 강화, 재판에 대한 정당성의 강화 등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⁵¹⁾ 그러나 참여재판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금처럼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으로 국민이 사법제도를 불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면서 사회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참여재판을 통해서 사법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사회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직간접적 이익은 투입된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

8.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결여’에 대한 평가

가. 권고적 효력뿐인 참여재판의 실효성

현행의 참여법률이 배심원의 평결에 법원이 기속되지 않고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들여 도입한 참여재판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그 실효성에 강한 의구심을 주며 국민주권주의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현재 배심원의 평결은 기속력을 가지지 못하지만, 다수의 배심원을 소환하여 장시간의 재판 절차를 거친 후 심도 깊은 토론과정을 겪은 다음에 나온 평결을 법원이 쉽사리 배척

50) 이 연구에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1단계 사법참여제도가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10년간 완성된 사법참여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비용을 추계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시행에 따른 편익의 크기는 추정하지 않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참여재판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예산의 추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용역과제, 2005. ,

51) 한인섭·한상훈 편(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 앞의 책, 286-290면.

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참여법률에서는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경우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설명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참여법률 제48조 제4항, 제49조 제2항). 이것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재판부가 선택할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직업법관이나 법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느껴져 배심원의 평결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결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⁵²⁾ 실제 현재까지 진행된 배심재판의 90% 이상 사건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여 판결하였다. 시행 2년 동안 159건의 참여재판 중에서 90.6%에 해당하는 144건에서 평결과 판결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일치한 사건은 15건인데 대부분 배심원이 무죄평결을 하였으나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사례이다. 그 중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재판부가 유죄 판결한 경우가 13건이고,⁵³⁾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재판부가 무죄(이유 무죄를 포함) 판결한 것이 2건이다.⁵⁴⁾ 그리고 평결과 판결이 불일치한 사건 중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바뀐 사례가 1건 있다.⁵⁵⁾ 이처럼 비록 배심원의 평결이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지만 상당수의 판결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배심원 평결이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여재판의 존재의의나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는 지나친 표현일 수 있다.

나. 지나치게 높은 항소율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59건 중 139건이 항소가 된 것으로 항소율이 87.4%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나 일반 공판절차로 진행된 경우의 항소율 77.3%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 중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어느 정도 예상되었지만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다. 구체적으로 보면 참여재판에서의 피고인의 항소율(쌍방 항소한 경우

52) 이금옥, 앞의 글, 46면.

53) 이 중 4건은 경합범 중 일부는 평결과 판결이 일치, 나머지는 평결과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임.

54) 이 중 한 건은 강도상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배심원이 강도살인을 유죄평결하였으나,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없이 강도치사를 유죄로 판결하고, 판결이유에서 강도살인을 무죄로 판단함. 당시 재판부가 “강도살인 유죄” 또는 “살인부분 무죄” 중 평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결과 판결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에 대한 죄책을 진다”는 취지이므로 평결과 판결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님.

55) 배심원 무죄평결 → 재판부 유죄 판결 → 항소심 파기자판, 무죄 판결. 법원행정처, 앞의 책, 23면.

를 포함하여 계산)은 69.2%이고, 일반 재판에서는 항소율은 71%로 별 차이 없다. 그러나 특히 검사의 항소율(쌍방 항소한 경우를 포함하여 계산)은 일반 재판에서는 21.2%에 불과하나, 참여재판에서는 58.5%에 이르고 있다.⁵⁶⁾ 이는 ‘양형부당과 배심원의 감정(동정)에 호소하는 재판이 많았다’는 검찰의 평가⁵⁷⁾와 참여재판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심 합의부 사건의 항소율은 52%에서 56% 수준이었고, 지난해 전국 법원의 형사합의부 항소율은 52.3%였다. 이와 같은 평균 항소율과 비교해 볼 때 참여재판의 항소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경향은 상고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참여재판의 상고율은 56.1%이며, 같은 기간 각급 고등법원의 상고율 31.8%보다 높다.⁵⁸⁾ 이처럼 참여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재판에 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드는 참여재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참여재판의 상소율이 높은 것이 참여재판의 접수가 저조하고 철회율이 높은 것과 반드시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 참여재판의 상소율이 높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IV.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참여재판에 대하여 기대하고 우려했던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가 증진되고 있다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시간적·경제적 비용증대 등의 문제는 앞으로 참여재판의 진

56) 법원행정처, 앞의 책, 20면.

57) 실제 대구지법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의 여동생이 아기를 안고 나와 배심원들의 동정심을 자극, 강도상해범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양형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이처럼 참여재판에서 변론과 증언이 배심원들의 법률지식이 아닌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변호인측에서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이나 신변상태 등 형량을 낮추기 위해 눈물로 호소하게 되면 검찰은 마땅한 대응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법률신문, 2008.03.10.

58) 법원행정처, 앞의 책, 25-28면.

행을 더 두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문제가 참여재판에서는 발생할 여지가 보이지 않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리고 배심원 결정의 신뢰성과 배심원 선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기우에서 발단한 편견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참여재판 시행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접수율과 높은 철화·배제율에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항소율과 함께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으로 인한 참여재판의 실효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비판되고 있다.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는 배심원의 출석률의 경우도 국민의 소극적인 참여로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화이트칼라 범죄의 필요적 참여재판

낮은 접수율과 높은 철화·배제율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피고인의 참여재판회부에 대한 의사표시기간을 늘이는 방법, 합의부관할사건 중 일정한 범죄(가령 재산범죄)를 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확대하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재판원제도 처럼 대상사건에 대한 재판은 모두 참여재판에 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고인이 나 법원의 판단을 배제하는 방법⁵⁹⁾ 등이 고려되고 있다.

먼저, 대상 사건에 비해 접수되는 참여재판이 적은 것은 피고인의 참여재판회부에 대한 의사표시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다. 참여법률 제8조 2항은 피고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표시를 위한 숙고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금기간을 늘여서라도 신청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피고인의 참여재판 선택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⁶⁰⁾ 그러나 앞으로 참여재판제도가 피고인에게 충분히 공지가 된다면 변호인

59) 김태명,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과제”, 인권과 정의 Vol. 379(2008.3), 34면.

60) 피고인이 수사단계에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공소제기가 되고 공소장부분을 송달 받은 후 7일이 경과하고 나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구선변호인이 지정된다면, 실제 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오로지 피고인 스스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나중에 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이미 시기를 놓치게 될 수 있다. 반면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조력없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하지

선임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 스스로 참여재판회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행 의사표시기간을 7일을 피고인의 구금기간을 늘려가며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현행대로 7일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중범죄에 한정하고 있는 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배심원들이 비교적 판단하기 쉬운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위주로 참여재판의 대상을 확대하면 현재의 저조한 신청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⁶¹⁾ 그러나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대상사건만 확대한다고 신청률이나 접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상황은 그대로인데 대상사건만 늘어난다면 오히려 신청률이나 접수율은 더 줄어들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대상사건에 대한 모든 재판을 참여재판에 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견해가 있다.⁶²⁾ 물론 대상사건의 의무적 참여재판화를 통해서 피고인이나 법원의 판단을 배제하여 모든 대상사건을 참여재판으로 한다면 분명 낮은 신청률이나 높은 철회·배제율의 문제를 극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범운용 중인 참여재판의 목적이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의 회복(참여법률 제1조)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운용에 있어서 보다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대상사건을 의무적 참여재판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표현되는 법조비리와 상류층·권력층의 범죄 즉 화이트칼라 범죄의 처리과정에서 오는 사법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화이트칼라 범죄의 피고인들은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조부조리의 이익을 누려 왔던 수혜자로서 전관의 힘이 약해지는 참여재판을 선호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화이트칼라 범죄를 필요적 참여재판화하는 것이 시범운용 단계의 참여재판이 시도해 볼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⁶³⁾

많은 사건에 대하여도 다수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김태규, 앞의 글, 5-6면.

61) 이금옥, 앞의 글, 152-153면.

62) 이은모,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일본의 재판원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Vol.26, No.1,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416면.

63) 이에 대해 화이트칼라 범죄는 전문가의 판단이 절실히 요청되는 영역으로서 배심재판제도에서도 매우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역이고,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숨방망이 양형이므로 참여재판에서도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에는 여전히 양형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제 등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2. 통상절차 회부사유의 구체화

위에서처럼 참여재판의 대상범죄들을 모두 피고인의 선택을 할 수 없게 하여 의무화하더라도 현행법처럼 법원이 포괄적인 규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면 참여재판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참여법률에서는 법원이 배제하여 일반형사절차로 회부되는 사유를 ‘그 밖의 사정’⁶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⁶⁵⁾,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⁶⁶⁾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예외적인 사정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정형식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들 때문에 많은 수의 사건이 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을 거부당했다. 현실적으로 2008년과 2009년 두해 동안 피고인이 신청한 569건의 사건 중에서도 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59건과 미제사건인 46건을 제외한 364건이 법원에 의해 배제되거나 피고인이 철회하였는데, 이들 중 37%가량인 136건이 ‘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이라는 이유에서 재판부가 참여재판에 회부하기를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야말로 사실상 참여재판에 의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고 또 많은 경우에 부인사건이라는 이유로 참여재판 신청이 거부된다면 피고인들은 점차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배제사유들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필요한 것이다. 시행령의 입법이 이어진다면 해결될 수 있을 문제이지만, 모법인 참여법률에서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한 규정 형식이 필요하다.⁶⁷⁾

64)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참여법률 제6조)

65)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참여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66)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 그 밖에 심리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참여법률 제11조).

67) 정진연, “국민참여재판과 형사재판의 소송주체의 역할비교”, 법학논총 제19집(2008.2),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3면.

3. 참여재판 평결의 기속력 부여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과 관련하여, 평결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민적 감각과 가치를 사법에 반영시켜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법적으로 볼 때에도 배심제를 실시하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나 참심제를 실시하는 독일 등의 국가 그리고 참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배심제적 요소를 가미한 재판원제도를 실시하는 일본에 있어서도 참여시민이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거나 참여시민의 평결이 법관을 구속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참여재판도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이 아닌 실질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⁶⁸⁾ 그래야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바람직한 제도로서 정착되어 나갈 수 있다고 한다.⁶⁹⁾ 물론 궁극적으로는 배심원 평결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참여법률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위반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헌법의 개정 없이 참여법률의 개정만으로는 즉시 배심원 평결에 구속력을 부여하기에는 위험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시범운영 중인 참여재판의 저조한 실적 때문에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처럼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은 참여재판의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유지하되 일정 정도의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충분할 것이다.⁷⁰⁾ 현재와 같이 배심원 평결이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지만 법관이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는 부담 등으로 90%의 사건에서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68) 이은모, 앞의 글, 423면.

69) 이금옥, 앞의 글, 147면.

70) 여기서 일정한 구속력이란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때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판결서에 명시하도록 방안 또는 배심원의 무죄평결에는 기속력이 있도록 하는 방안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4. 항소의 제한

현재의 단계에서 참여재판의 실효성의 문제는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높은 항소율에 있다. 지나친 항소는 참여재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심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내린 만장일치의 의견을 참여재판부에서 채택한 경우라면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⁷¹⁾ 이것은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을 직업법관으로 구성된 항소심은 그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제시한 것으로, 권고적 효력만 인정해 온 배심원 평결에 무게를 실어 일정범위의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참여재판이 시행되지 않는 항소심 재판부의 자유심증주의에 그 내재적 한계를 설정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결로서 한계를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참여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검찰의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검찰에서는 항소권이 있지만, 쉽게 항소를 하게 되면 참여재판의 존재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평결이 지닌 무게를 의식해 항소 여부 결정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항소심은 사후적 법률심으로서 사실판단은 그 심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⁷²⁾ 국민의 합의가 담긴 참여재판이라고 항소심을 전혀 배제하여 버린다면 잘못된 판결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구제라는 항소심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소심을 포함한 상소심은 사후적 법률심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71)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72) 프랑스와 독일은 참여시민의 의사에 대해 절대적 효력 또는 직업법관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면서 지속적 효력을 부여하면 항소의 문제도 이에 따라 논해지는 것이다. 즉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배심원 의사의 절대성을 인정하면서 직업법관에 의해 뒤집어질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배심재판에 대하여는 항소를 인정하지 않고 법률위반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하였던 점이 참고가 된다. 이완규, 앞의 글, 556-557면; 정웅석, “배심원 선정절차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120면.

각한다.

5. 적극적 대국민 홍보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8년도 법원관련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을 알고 있는지에 관해 과반수이상(59.3%)이 제도를 알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⁷³⁾ 참여재판의 성공여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심원 참여에 달려 있으므로 먼저 일반국민들에게 참여재판이 어떤 것인지 홍보하여서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범정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시점이 되었다.⁷⁴⁾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미국변호사협회(ABA)의 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배심제가 당연히 해야 할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배심원로서의 봉사가 불편해도 이를 감수하고 수행하여야 할 의무(84%)이며, 기꺼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58%)고 답하였다. 또한 대부분이 만약 자신이 법정에 서게 된다면 직업법관재판보다 배심재판을 선택하겠다고(75%) 응답하였고, 현재 배심제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80%)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배심제도는 이러한 국민들의 권리의식의 배경아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참여재판의 저조한 신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피고인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참여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참여재판의 신청으로 인하여 불측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여재

73) 종전 조사(2003.12.)에 없던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추가됨에 따라, ‘기여할 것’,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의 비율이 모두 감소하여 종전 조사에 비해 인식이 개선되었는지 정확히 비교하기 어려움. 법원행정처, 앞의 책, 30-31면.

74) 법원은 참여재판의 시민방청을 활성화하고 유도하기 위해 참여재판의 홍보물들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법원청사 게시판을 통해 안내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관공서 차원에서 게시판을 활용한 홍보와 일종의 시민교육 기회로 사용되고 있는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교육 등 다양한 사회인 교육 강좌에 참여재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각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 모의재판을 참여재판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금옥, 앞의 글, 151-152면;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저스티스 통권 106호(2008.9), 한국법학원, 2008.

판의 관할, 이송, 전담재판부 등의 문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⁷⁵⁾

6. 배심원을 배려하는 절차진행

대법원이 행한 배심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심원의 애로사항으로 장시간 재판 불편이 50.0%, 법률용어 이해의 어려움이 21.8%, 증거이해의 어려움이 10.0%, 보복 등 안전 우려가 10.3%, 수입 감소·직장불이익 7.9%를 꼽았다.⁷⁶⁾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배심원으로 참여할 경우 시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장시간의 재판으로 인한 불편이며, 생소한 법률용어 등으로 인한 이해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참여재판이 되려면 ‘알기 쉽고 빠른 재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서 사법참여를 통해 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법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대부분의 참여재판은 하루 만에 선고를 제외한 모든 절차가 종료하므로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인 심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공판 당일에는 배심원들이 복잡한 증거와 법률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정에서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비디오, 프리젠테이션 등과 같은 기법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⁷⁷⁾ 그리고 참여재판에 배심원들이 원하는 빠른 재판이란 보통 오전에 배심원 후보자로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한 때부터 배심원으로 선정되고 그날 바로 오후부터 시작된 공판절차에서 선고를 제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재판을 말한다. 공판절차에서 핵심적인 변론이나 평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좀처럼 줄이기 힘들 것이다. 가능한 방법은 배심원 선정기일에 보통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을 단축할 수 있다면 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원하는 빠른 재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5) 한상훈, 앞의 글, 2008.

76) 법원행정처, 앞의 책, 37면.

77) 이금옥, 앞의 글, 154-155면.

V. 결 론

한국 역사상 최초로 형사재판에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실제적 진실발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와 함께 배심원 결정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불공정한 배심원 선정,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증대,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의 문제 등 ‘3년 안에 폐지될 제도’라는 우려도 있었다. 2008년 1월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지금 이러한 기대와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가 증진되고 있다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 진실의 발견과 시간적·경제적 비용증대 등의 문제는 앞으로 참여재판의 진행을 더 두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문제가 참여재판에서는 발생할 여지가 보이지 않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리고 배심원 결정의 신뢰성과 배심원 선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기우에서 발단한 편견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참여재판 시행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접수율과 높은 철화·배제율에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항소율과 함께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으로 인한 참여재판의 실효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비판되고 있다.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는 배심원의 출석률의 경우도 국민의 소극적인 참여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대상을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불신의 원인인 화이트칼라 범죄로 확대하고 이들 범죄는 피고인의 선택이나 법원의 판단 없이 의무적 참여재판화하여야 한다. 둘째, 법원의 배제율을 낮추기 위하여 통상절차로의 회부사유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참여재판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참여재판의 항소심을 법률심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다섯째,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하며,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피고인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알기 쉽고 빠른 재판’으로 배심원을 배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박미숙 외 6인,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Ⅱ):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2008년/2009년)』, (2010. 1.),
- 사법개혁공대위(준), 『국민사법참여제도』, 2004,
- 안경환·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2005,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 한인섭·한상훈 편(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 『국민의 사법참여』, 경인문화사, 2010,
- 형사정책연구원,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Ⅰ)-형사 사법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법서비스 개선방안-』, 2004,
- 김대성,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의 도입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 김태규,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4호(통권 제76호), 2008,
- 김태명,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과제”, 인권과 정의 Vol. 379(2008.3),
- 박근용, “국민참여재판, 사법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다”, 시민과 세계 제13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8. 4.,
- 성선제, “미국의 형사배심제도”, 미국헌법연구, 미국헌법학회, 2003,
- 심희기, “시민의 관점에서 본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9. 12.,
- 안성수, “국민참여 재판제도 시행과 인권옹호(심포지엄 지정토론 요지)”, 저스티스 통권 제102호, 한국법학원, 2008. 2.,
- 이금옥,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12.,
- 이완규, “국민참여재판제도 정착 방안/지정토론”,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한국법학원, 2008. 9.,

- 이은모,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일본의 재판원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Vol.26, No.1,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전정호, “국민참여재판제도 정착 방안/지정토론”,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한국법학원, 2008. 9.,
- 정웅석, “배심원 선정절차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 정진연, “국민참여재판과 형사재판의 소송주체의 역할비교”, 법학논총 제19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2.,
- 최대권, “국민의 사법참여 -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2004,
- 한인섭, “한국의 배심원재판-준비과정과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토한다”,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2호, 2009,
-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저스티스 통권 106호, 한국법학원, 2008. 9.

The Interim Appraisal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Kim, Byung-Soo*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that people firstly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 in history of Korea starts With expectation for securing the truth-finding of the process and for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But, there are concerns as the credibility of jury verdict,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the increase of expense, the non-binding nature of the verdicts and 'the system that get out of use in 3 years'. These expects and concerns come into sights during 2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We should watch the development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about the truth-finding of the process, the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and the increase of expense. But, it is positive that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and 'All mighty is the dollar' do not exist i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Concerns for the credibility of juror verdict and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proved to be unfounded. But the biggest problems are low-end receipt ratio and a high withdrawal and exclusion ratio. Due to high appeal ratio and advice effect of jury verdict, the effectiveness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is being intensively criticized. The passive participation is discussed with directly-opposed judging the attendance rate of juror. To improve these problems, first of all, we should expand to White-Collar Crime that become the cause of

* Post-Doc, Institute of Law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School of Law, P.N.U./ Ph. D. of Law

the distrust of jurisdiction and White-Collar Crime be brought to compulsory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Secondly, to lower exclusion rate of the court, the causes of exclusion be materialized. Thirdly, the jury verdict be given binding effect in the end. Fourthly, the Appeal Court be limited. Fifthly, the government should start a nationwide campaign to foster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jury trials. Lastly, the juror be considered with 'Easy and Fast Trial'.

❖ Key words :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All mighty is the dollar, White-Collar Crime, Binding nature of the verdicts, Easy and Fast Trial.